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임오경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352

발의연월일: 2024. 7. 3.

발 의 자:임오경·서영교·한정애

박 정ㆍ이성윤ㆍ한민수

임미애 · 김용민 · 강유정

김병주 · 김용만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건강상태 확인과 질병의 예방 및 조기발견을 목적으로 건강검진기관을 통하여 진찰 및 상담, 진단검사 등 건강검진을 시행하고 있음.

그런데 현행법은 국가가 성·연령별 건강위험만을 고려하여 국가건 강검진을 계획하도록 하고 있어 개인의 질환은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, 획일적인 건강검진 실시로 만족도가 떨어지고 비급여 민간검진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. 따라서 일률적인 검진을 벗어나 건강조건별로 수검자가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검진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국가가 국가건강검진을 계획할 경우 성·연령뿐 아니라 특정 질환별 건강위험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건강검진의 효과를 높이고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려는 것임(안 제5조제2항 및 제20조제1항제1 호).

법률 제 호

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건강검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항 중 "성·연령별"을 "성별·연령별·특정 질환별"로 한다. 제20조제1항제1호 중 "성·연령별"을 "성별·연령별·특정 질환별"로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|
| 제5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 | 제5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 | | |
| 무) ① (생 략) | 무) ① (현행과 같음) | | |
| ② 국가는 <u>성·연령별</u> 건강위 | ② <u>성별·연령별·특정</u> | | |
| 험을 고려하여 국가건강검진을 | <u> 질환별</u> | | |
| 계획하여야 한다. | | | |
| | | | |
| ③ (생 략) | ③ (현행과 같음) | | |
| 제20조(조사・연구사업 등) ① 보 | 제20조(조사·연구사업 등) ① | | |
| 건복지부장관은 건강검진의 효 | | | |
| 율성과 적절성을 기하기 위하 | | | |
| 여 건강검진에 관한 다음 각 | | | |
| 호의 조사・연구사업을 수행한 | | | |
| 다. | . | | |
| 1. <u>성・연령별</u> 건강검진 지침 | 1. <u>성별·연령별·특정 질환별</u> - | | |
| 개발 | | | |
| 2. ~ 7. (생 략) | 2. ~ 7. (현행과 같음) | | |
| ②・③ (생 략) | ②・③ (현행과 같음) | | |